

11.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 1998-402호 1998. 9. 14

개정이유

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설계등 용역 입찰참가자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감리·건설기술자 관리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〈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(안)〉

- 가.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까지만 허용하던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까지 허용토록 학력제한을 완화하고,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('98. 5.)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명칭을 변경함.
- 나. 건설업체대표자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를 교육훈련대상에서 제외하고,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훈련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편의를 제공함.
- 다. 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를 종전 50억원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하여 내실화함
- 라. 건설공사감독업무지침을 폐지하여 감독업무의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하도록 함.
- 마. 우수건설업자 지정시한을 공사발주 익년 6월말에서 공사준공 익년 4월말까지로 조정하고, 우수건설업자 결격사유에 하자등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추가함.
- 바. 건설기술자의 신고의무위반과 교육훈련 미이수자등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완화함

사. 1998년 2월 확정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거하여 1999년부터 국립건설시험소 기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·통합됨에 따라 명칭변경등 기능이 관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.

〈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(안)〉

- 가. 최초교육 대상자중 중급이상 기술자에 대한 교육기간을 단축(2주→1주)하고, 외국인 기술자도 내국인과 같이 교육훈련을 이수(3년마다 1주이상)토록 함.
- 나.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수회 분활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.
- 다. 설계등 용역의 하도급범위를 확대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, 복사등 단순업무의 하도급은 발주청 통보없이 가능토록 함.
- 라. 프리랜서 기술자제도를 도입하여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건설기술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발전 및 업계부담을 완화함.
- 마. 설계등 용역 입찰참가 자격자수 제한(5~7인)을 철폐하여 모든 적격점수 통과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함.
- 바. 부실벌점 점수폭을 축소하여 벌점부과기관간 형평성을 제고함.
- 사. 15일마다 보고토록 되어 있는 감리일지를 매분기마다 자기 디스켓으로 제출도록 하여 감리원 부담을 완화함.
- 아.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범위를 총대상업체의 10%로 조정하여 내실화함(우수용역업자 : 5%→10%, 우수건설업자 : 20%→10%).